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5. 31(월) 총 14매(본문6)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담 당 자	• 팀장 전성배, 사무관 박정곤, 서태진 ☎ (044) 201-3314, 4177	
	한국부동산원	담 당 자	• 시장관리처장 이재우, 부장 신화석, 팀장 김용진 ☎ (053) 663-8641, 8642	
보 도 일 시		2021년 6월 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31.(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 전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다.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

- ① (신고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 확정일자(만건, '20년 기준) : 전국 217,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3.6 (1.7% 비중)

- ②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하였다.

*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원

** 월세 평균액(만원, 전국) : 고시원 28.3, 비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20.6

- ②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 ③ (신고 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제 시행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부동산원 협력중개업소 등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약 7만장 배포

** 위임장은 임대차 신고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며, 신고인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예시 서식을 등재할 예정

- ④ (제도 기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제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제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제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전에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나.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편익

- ①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된다.

* 방문, 온라인신고에 관계없이 수수료(600원)가 면제되며 임대차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 표기

○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②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을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고 데이터의 공개

☞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의 검증(최소 4~5개월)을 거쳐 '21.11월경 시범공개 추진

* 공개 가능 데이터 :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

다. 신고제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① (시범 운영) 국토교통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시스템 및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점검을 위한 시범운영(4.19~5.31)을 실시하고 일선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대전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보정동

* 시범운영지역 신고접수 결과(5.27 기준): 379건(방문 317건, 온라인 62건)

○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담당자는 “임대차 신고업무가 기존 확정 일자 신고와 유사하여 시범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라고 전하며

- 시스템상 정보입력 간소화 및 온라인 팝업 안내 홍보 강화 등 현장에서 제기한 개선의견이 본격 시행전 모두 반영되어 제도가 무리없이 잘 운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② (지자체 담당자 교육)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전국 17개 시도, 시군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제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5.6~5.21, 2주간)

*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도별 인원배정 및 장소제공

○ 사전교육 자료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이 신고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고제 전반의 내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교육내용) 임대차 신고제 하위법령 내용, 신고처리 절차, 지자체 홍보당부 등

< 지자체별 임대차신고제 교육 실시 현황 >

권역	일시	장소	참석 인원	권역	일시	교육장소	참석 인원
경남	5. 6(목)	경남도청	15명	제주	5.11(화)	서귀포문화회관	60명
부산	5. 7(금)	부산시청 회의실	20명	전남·전북·광주	5.11(화)	광주시청	25명
경기·인천	5.10(월)	수원 인재개발원	70명	강원·충북	5.12(수)	충북문화관	4명
경북·대구·울산	5.10(월)	대구소재 세미나실	32명	세종·충남	5.13(목)	보람동복지센터	20명
서울	5.14(금)	서소문청사 회의장	40명	대전	5.21(금)	월평복지센터	20명

③ (주요 반영의견) 입법예고, 시범운영 및 지자체 순회교육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며, 주요 반영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대학교·고등학교 등 학교기숙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회사기숙사는 신고대상

② 단기 임대차 계약도 대상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이나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미신고시 지자체에서 단기계약의 종합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

라. 제도정착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초기 신고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 임대·관리 관련 민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반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 자발적 참여를 희망한 협력단체는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3곳으로 신고제 안내와 무료 신고대행을 지원함으로써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1) 한국주택관리협회('90 설립허가): 전국 1.4만 단지 아파트 750만 세대를 관리하며 새로이 전입하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 홍보
- 2)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16 설립허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의 개인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 홍보
- 3)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10 설립허가): 1.9만명 회원들 임대주택 중개·위임시 임대차 신고 대행 및 협회 주요업무(임대주택 중개·관리)와 연계하여 신고제 홍보

□ 또한 행정안전부 협조로 6월 1일부터 정부대표 민원포털인 정부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를 안내하도록 임대차 신고 홈페이지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88-0149)로 문의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09 ~ 18시 동안 운영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지원팀 박정근, 서태진 사무관(☎ 044-201-3314, 41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하며,
- (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월 1일 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하여 사이트 접속

②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 ☐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

④ '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을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 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⑥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되며

- 또한,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⑦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 예정입니다.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⑧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 ☐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⑨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 ☐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 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 *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접수완료시점)

⑩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며,
 -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다만, 계약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후 30일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⑪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2

임대차 신고서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 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①임대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임차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임대 목적물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 그 밖의 주거용[]							
	④소재지(주소)								
	건물명()		동	층	호				
	⑤임대면적(㎡)		㎡	방의 수(칸)	칸				
임대 계약내용	⑥신규 계약 []	임대료	보증금	원					
			월차임	원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체결일	년	월	일				
	⑦갱신 계약 []	중전 임대료	보증금	원					
			월차임	원					
		갱신 임대료	보증금	원					
			월차임	원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체결일	년	월	일				
	⑧「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사용 []미사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임대인 : (서명 또는 인)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위임 제출시)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 3

임대차 신고필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관리번호	제 호	접수번호	제 호	접수완료일	확정일자번호	제 호			
임대인	성명(법인·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고유번호)					
	주소(법인·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임차인	성명(법인·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고유번호)					
	주소(법인·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임대 목적물	종류								
	소재지 (주소)								
	건물명()	동	층	호					
	임대 면적(㎡)	㎡	방의 수(칸)	칸					
임대 계약내용	() 계약	임대료	보증금	원	변경 보증금	원			
			월 차임	원	변경 월 차임	원			
		계약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체결일			변경 계약 체결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4항,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7항, 제6조의3제3항 및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출장소장)

직인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아직도 확정일자 받으러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세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온라인 신고
계약제출 후 30일 이내 신고 (신규, 변경, 해지)

[신고 시행일]
2021년 6월 1일(화)

[신고 의무인]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비합법 신고)

[신고 대상]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경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합법자 부속 시 필요)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목 소재 신고관청(읍·면·동·출장소) 방문신고

[제재 사항]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이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온라인 신고
계약제출 후 30일 이내 신고 (신규, 변경, 해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너

주택 임대차 신고 처리 절차

1. 신고서 작성
2. 신고서 제출
3. 신고서 접수
4. 신고서 처리
5. 신고서 확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소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고를 하여 신고제도를 통해 신고제도를 소개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고를 하여 신고제도를 통해 신고제도를 소개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소개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소개합니다.

리플릿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1.6.1 본격 시행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변경, 해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할 의무를 부담함

임대차 신고제, 왜 하나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번에!

거래는 간단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까지!

주목의 실거래 정보 공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임차인의 협상력을 높이고

어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까요?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 금액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관리료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거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 임대인, 임차인 모두 확인신고 가능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공동신고

꼭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인적 사항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혹은 법인명)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임대차 관련 정보
- 임대 목적물
- 임대료 계약 내용
- 월차임
- 보증금
- 임대보증금 또는 월차임 수

계약 내용
- 임대료, 관리료, 차임
- 계약기간
- 퇴거일
- 임대차 계약 초기 확정
- 계약 종료일
- 계약인(임대인, 임차인)

구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 2부 (임대인, 임차인)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1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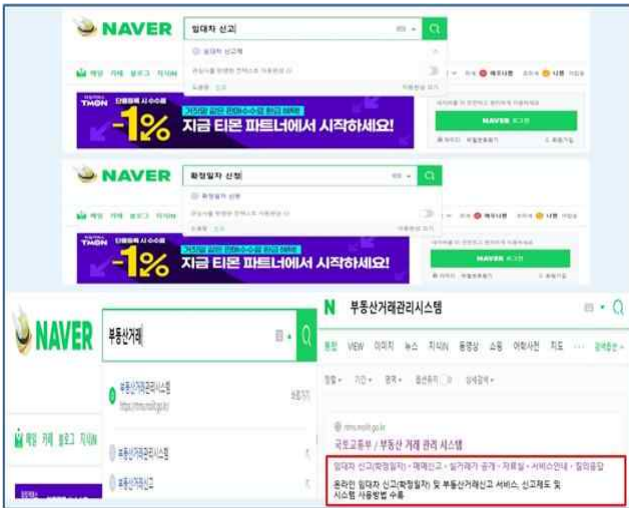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카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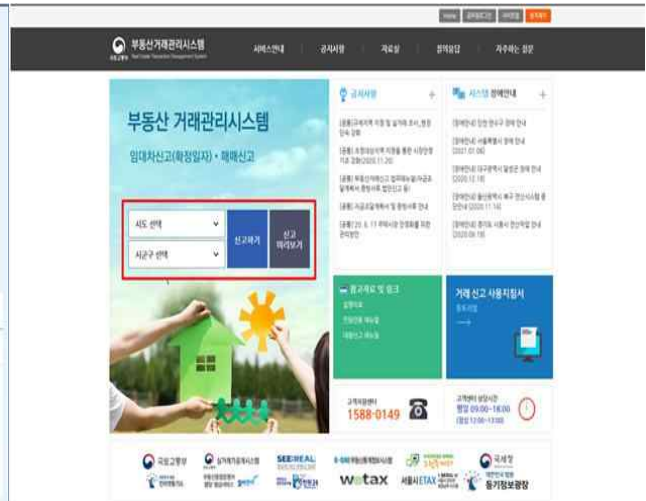
참고 5

온라인 신고방법

1.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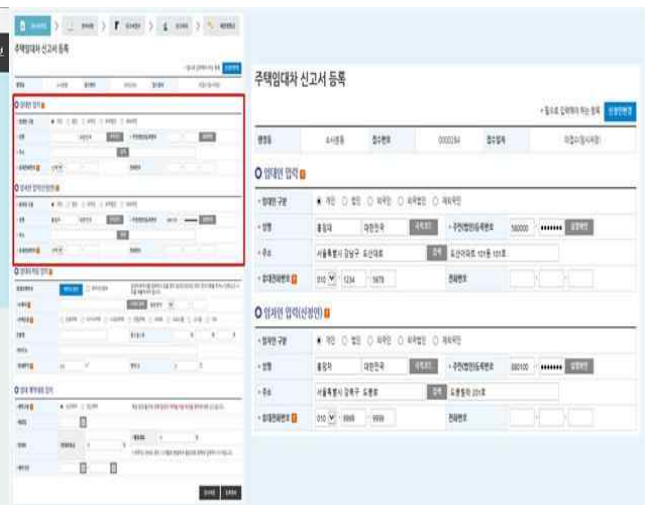
2. 시도, 시군구 선택



3. 임대차 신고서 등록



4. 임대차 신고서 작성



5. 임대차 신고서 전자서명



6. 임대차 신고서 신고이력조회



참고 6

정부24 내 임대차신고 메뉴 안내

통합검색 결과 임대차신고 안내 메뉴

정부24 서비스 정책정보 기관정보 고객센터

통합검색

전체 임대차계약신고

전체 335 신청서비스 0 서비스안내 5 정책정보 230 기관정보 100 고객센터 0

"임대차계약신고"(으)로 검색한 결과, 총 335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서비스안내 5건

중앙서비스 3건 지자체서비스 2건

주택 임대조건 신고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차기간, 임대료,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하기 위하여 대응방은 금액(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 임차인 현황(은주택으로 한정)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

사이트 가기

주택 임대차신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다.

사이트 가기

민원서비스 국토교통부 인증서 필요(본인)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민원서비스 국토교통부 인증서 불필요

사이트 가기

전입신고 신청완료 시 임대차신고 안내 메뉴

정부24 서비스 정책정보 기관정보 고객센터

()님의 전입신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 처리상태를 정부24(www.go24.go.kr)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할 주민센터(혁신동053-662-436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www.wdss.go.kr)에서 신청하거나 이사온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시 공과금 영의변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http://cyberkepcc.co.kr) 또는 고객센터 123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정부24'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신청내역 바로가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임대차신고 신청 버튼 클릭 -> 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완료

* 임대차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신고관청에 계약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신청 3